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공고 제2026-09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3월 11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의장 인

서울특별시 광진구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미영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2457
----------	------

발의연월일: 2026. 3. 10.

발 의 자: 김미영·고상순·고양석·
김상배·신진호·전은혜·
최일환 의원(총 7인)

1. 제정이유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민의 건강과 체력을 증진하고 자발적인 생활체육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관내 학교 체육시설 개방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안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 지원계획 수립·시행 및 지원 사업(안 제3조~안 제5조)

다. 구청장과 학교장 간 협약체결, 표창에 관한 사항(안 제6조~안 제7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장

(참조: 의회사무국장, 전화: 02-450-2843, 팩스: 02-454-0438,

전자메일: lotushn@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및 「생활체육진흥법」 제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민의 건강과 체력을 증진하고 자발적인 생활체육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학교 체육시설 개방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교 체육시설”이란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학교 체육시설 중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에게 개방이 가능한 시설을 말한다.
3.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교 체육시설의 개방 활성화를 위한 지원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시행) 구청장은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 목적
2.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 대상 범위
3.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을 위한 세부 실행계획
4. 그 밖에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각급 학교 체육시설의 안정적인 개방을 위하여 학교의 여건을 고려하고 학교의 장, 학생, 학부모, 교직원, 구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학교 체육시설의 개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학교 체육시설 개방에 따른 체육시설 설치, 관리 및 유지보수 지원사업
2. 학교 체육시설 개방에 따른 관리인력 지원사업
3. CCTV 설치 등 학교 안전시설 설치 지원사업
4. 그 밖에 학교 체육시설의 개방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사업

제6조(협약체결) ① 구청장은 학교 체육시설의 원활한 개방을 위하여 학교장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협약서에는 학교 체육시설의 종류 및 개방시간, 그 밖에 필요한 협력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7조(표창) 구청장은 학교 체육시설의 개방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단체 또는 학교, 개인에게 「서울특별시 광진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4조 제2항제2조

2. 미첨부 사유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4조(비용추계서 작성) ①(생략)

②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주관부서에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사전에 예산담당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하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작성자

- 문화교육국 체육진흥과 체육시설팀 심혜진(02-450-9777)

붙임1**관계법령****법규명****국민체육진흥법**

제3조(체육 진흥 시책과 권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체육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국민의 자발적인 체육 활동을 권장·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 시책의 수립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민체육 진흥에 관한 기본 시책을 수립·시행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기본 시책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체육 진흥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법규명**생활체육진흥법**

제5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되는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생활체육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활체육 진흥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생활체육시설의 설치 및 유지·보수 등에 관한 사항
3. 생활체육 활동에서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생활체육대회 육성에 관한 사항
5. 생활체육 국제 교류·협력 및 국제행사 개최 등에 관한 사항
6.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
7. 생활체육 정보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8.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 및 복리후생 증진에 관한 사항

9. 생활체육시설의 감염병 등에 대한 안전·위생·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 및 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